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의 정리구분)에 따르면 일상경비등,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하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재무회계 규칙은 지급에 관한 뜻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내용에 따른 별지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
-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결의서의 사용)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

□ 지적사항

사례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건별 승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

□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계약 내용(금액·상황)에 따른 적정 지출결의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